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15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박희승
전용기 · 이성윤 · 안호영
이정문 · 양부남 · 문금주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지원을 도모하며, 장병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의2).
- 나.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 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3항).
- 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를 통해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마.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인원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의8).
- 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 취업 시 받는 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
- 사.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의 소득공제 기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의3).

- 아.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1조의19).
- 자. 혼인신고 시 1회 한정으로 적용되는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2조).
- 차.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2).
- 카.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⑤ (생략)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

-----2031년-----

② (현행과 같음)

③ -----

-----2029년-----

④·⑤ (생략)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

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
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
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
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
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
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
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
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

2031년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31년

<p>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⑦ (생략)</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